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 산업자원부령 제122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1년 4월 7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전소”라 함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에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 그 밖의 전기설비의 총합체를 말한다.
2. “개폐소”라 함은 다음 각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 또는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 가. 발전소 상호간

- 나. 변전소 상호간
- 다. 발전소와 변전소간
3. “송전선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가. 발전소 상호간
 - 나. 변전소 상호간
 - 다. 발전소와 변전소간
4. “배전선로”라 함은 다음 각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5.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6. “수전설비”라 함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7. “구내배전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8. “저압”이라 함은 직류에서는 75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라 함은 직류에서는 75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라 함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1.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2.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미만인 비상용 예비발전기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

설비

2. 다음 각목의 위험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 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정하는 화약류(장난감용 꽃불을 제외한다)를 제조하는 사업장
 - 나. 광산보안법에 의한 감동탄광
 - 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저장장소
 - 라.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
 3. 다음 각목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설비
 - 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
 - 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단란주점
 -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력단련장
 - 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상점가
 - 마.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바.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 사. 소방법에 의한 집회장
-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야전력(이하 “심야전력”이라 한다)의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에 제1호·제5호·제7호 및 제10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사업개시후 5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3.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4. 배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구역의 경계를 명시한 5만분의 1 지형도
5. 발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송전관계 일람도 및 발전원가명세서
6. 신용평가의견서(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거래신뢰도를 평가한 것을 말한다) 및 소요재원 조달계획서
7.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기재한 서류
8.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등기부등본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9. 신청인이 설립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10.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에 대한 원자력법 제11조제1항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허가신청중인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사본)

제5조(변경허가 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구역
 2. 공급전압
 3. 원동력의 종류 및 설비용량(발전사업에 한한다)
- ② 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허가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허가증)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설비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법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2. 소요재원 조달계획이 구체적일 것
- ② 법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일 것
 2. 제1호의 규정의 의한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것

제8조(사업개시신고)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신청)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양수인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합병(분할)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수 또는 분할·합병이유서
2.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합병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

3.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사업양수의 경우에 한한다)
4. 분할·합병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5. 양수인 또는 분할·합병의 당사자의 일방이 전기사업자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등기부등본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6.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7.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양수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제10조(양수 및 분할·합병 인가의 공고 등)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발전시설용량이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의 경우에 한한다)는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를 한 때에는 법 제10조 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양수 또는 분할·합병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양수 또는 분할·합병의 내용
3. 양수 또는 분할·합병의 예정 연월일

제11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3조(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당해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3. 전기사용자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전압 또는 표준주파수 외의 전압 또는 주파수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에 한한다)
 5. 전기를 대량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목에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 용량 5천킬로와트(건축법시행령 별표 1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 사용예정일 1년전

나. 용량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 : 사용 예정일 2년전

다. 용량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 : 사용예정일 3년전

라. 용량 30만킬로와트 이상 : 사용예정일 4년전

6. 법 제66조제6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7. 재해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력수전예정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요금
2. 전력거래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방법
3. 송·배전사업자간 및 송·배전사업자와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신청 방법 및 절차
5. 공사비 등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자가 부담할 비용의 기준 및 부담방법
6. 송·배전사업자와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자간의 접속점 및 접속기준
7. 그 밖에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5조(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의 인가신청)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을 인

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송전용(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기타이용조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 조건안
2.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4.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투자계획서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비교표
3. 제14조제1호·제2호·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제16조(기본공급약관의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 사업자가 작성하는 기본공급 약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구역
2. 공급의 종별
3. 공급전압 및 주파수
4. 전기요금
5.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 설치주체 및 내용과 전기설비공사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6. 공급전력 및 공급전력량의 측정방법 및 요금계산 방법
7.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책임분계점
8. 전기의 사용방법 및 기계·기구 등 용품의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에 정한 것외에 다른 공급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17조(기본공급약관의 인가신청)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급약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공급약관안
2. 전기요금 및 그 밖에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3. 기본공급약관의 시행일부터 3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② 법 제1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급약관의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본공급약관변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2.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내용비교표
3. 제16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와 변경 시행일부터 3년간의 기간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제18조(전기의 품질기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는 그가 공급하는 전기가 별표 3에서 규정하는 표준전압·표준주파수 및 허용오차의 범위안에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그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및 주파수
2. 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3.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주파수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준·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설비 설치공사의 착공·준공 또는 공사기간을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전기설비별 용량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신규건설 또는 폐지되는 연도별 전기설비용량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전기설비용량을 변경하는 경우

제21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전기사업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설비시설계획신고서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공급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시설계획신고서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 가. 전기설비의 설치이유서
 - 나. 연도별 공사비내역서
 - 다. 연도별·월별 발전계획 및 자가소비전력량을 기

제한 서류(발전사업자에 한한다)

라. 별표 4의 전기설비별 기재사항에 따라 작성한 전기설비시설계획서

2. 전기공급계획신고서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최대전력공급계획서

나. 별지 제17호서식의 발전계획명세서

다. 별지 제18호서식의 보수계획명세서

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연료계획명세서

마.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전계획명세서

바. 별지 제21호서식의 송전계획명세서

제22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조시설마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제조·공급

(정련·변환·가공)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의 개요서
2. 제조시설의 공사공정표
3. 연도별 공사비내역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4. 제조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의 연도별 생산계획을 기재한 서류
5. 생산원가계산서 및 손익계산서
6. 공급계약서 사본
7. 관계행정기관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23호 서식의 원자력발전연료 제조·공급(정련·변환·가공)계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2. 변경공사 개요 설명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23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 법 제40조 제1항제3호에서 “기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회원 또는 회원 외의 자의 출연금 및 회원의 출자금
2. 자산의 금융기관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제24조(전력거래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력거래수수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수료의 결정을 위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이사회 의결서 사본
 2. 수수료의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 ②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운영비 및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용역비·연구개발비 및 선유지비 등 그 밖의 경비를 산정할 것
2. 연간 예상 전력거래량은 회원인 발전사업자의 전년도 총 전력거래량에 당해 연도의 예상 전력수요증감량을 반영하여 산정할 것

제25조(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수행)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154킬로볼트 이하의 송전선로 또는 배전선로에 대한 전력계통 운영업무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위원회는 법률·분쟁조정분야, 전기요금분야, 소비자보호분야 및 전력계통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각 전문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전기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7조(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각 해당분야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
 - 2. 전기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문
 - 3. 그 밖에 전력분야의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기위원회 위원장이 연구·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기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된다.
-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한다.

제28조(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① 법 제61조제1항전단 및 동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대상은 별표 5와 같다.

-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
- ③ 법 제62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 또는 변경공사계획에 대한 인가 및 신고대상은 별표 7과 같다.

제29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인가신

청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4항 및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공사를 한 자는 공사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또는 전압 20만볼트 미만인 송·변전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기재한 서류
 - 2. 당해 공사후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 ③ 법 제61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공사계획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 2. 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주변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는 법 제61조 및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

사를 하는 전기설비로 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 2. 전기설비의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 다른 전기설비를 시험하기 위하여 그 완성된 부분의 일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3. 전기설비의 공사내용과 설치장소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터어빈·압력용기·액화가스저장조·액화가스용기화기·가스홀다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 1. 물을 사용하는 용기 또는 관으로서 최고사용온도가 섭씨 100도 미만의 것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20킬로그램
- 2. 액화가스용 용기 또는 관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0킬로그램
-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기 외의 용기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관외의 관에 있어서는 최고사용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길이방향이음에 있어서는 제곱센티미터당 5킬로그램)

③ 사용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경공사 내용이 법 제61조 또는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를 한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 2.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 ⑤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사계획인가서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2.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및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1. 비상용의 발전설비로서 사용목적 및 횡수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상용의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그 밖의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원자력발전소로서 원자력발전연료의 연소도 미달로 원자력발전연료의 교체시기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에 따라 검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0에 의하여 다음 검사시기를 정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법 제63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해 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당해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동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당해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동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에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34조(검사결과와 통지) 안전공사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전기판매사업자(법 제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안전공사에 점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공사를 말한다. 제38조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할 시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2월 이내
 2. 정기점검은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전후하여 2월 이내
- 가.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나.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게임제공업시설·노래연습장,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그 밖에 시·도지사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

다. 가목 및 나목에 정하는 것 외의 설비는 2년이 되는 날

3. 정기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의 재점검은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날

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부적합한 경우 실시하는 2차점검은 부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2월 이내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 실시하는 3차점검은 법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기간이 경과한 후 1월 이내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 시설물을 증축 또는 개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법령의 허가신청·등록신청·신고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게임제공업시설·노래연습장
3.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유흥주점
4.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5.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 ③ 시·도지사는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수리명령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가 법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급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3차 점검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하되,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함에 있어서 당해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시설물의 전기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법 제6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 ⑦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한 경우 점검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 3.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에서 전기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당해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37조(점검결과의 기록 등) 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또는 점검결과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1.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점검연월일
- 3. 점검의 결과
- 4. 통지연월일
- 5. 통지사항
- 6. 점검자의 성명
- 7. 사용전점검의 경우에는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제38조(점검업무의 위탁승인 등)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업무의 위탁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 서식의 점검업무위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위탁이유서
 - 2. 위탁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 ② 법 제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업무의 위탁승인을 얻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위탁기간의 변경 등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점검업무위탁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업무의 위탁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위탁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물밀선로의 보호구역 지정) ①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밀선로의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보호구역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물밀선로 보호구역 위치도(축척 25만분의 1 지도)
- 2. 보호대상물 설치좌표 및 보호구역의 범위를 기재한

서류

- ②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밀선로 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은 전기사업자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보호구역 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등) ①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로 한다.

1.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수용설비(제3조제2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로서 제조업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
2.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용량이 200킬로와트 미만이 전기수용설비

② 법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자가용 전기설비”라 함은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를 말한다. 다만, 법 제7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는 전기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안전관리담당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되, 전기설비별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보조인력 및 직무범위는 별표 12와 같다.

④ 법 제7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그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우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1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1인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할 수 있다.

⑤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지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통보를 한 전기설비
2. 사용을 중지한 심야전력 전기설비
3. 사용을 중지한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 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여야 한다.

제41조(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법 제7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의 업무범위는 별표 13과 같다

제42조(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등록 및 신고) ①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다. 자본금 또는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라. 소속기술인력에 대한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 마. 장비명세서

2. 개인대행자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 나.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 다. 장비명세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4의 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을 갖춘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 3. 자본금 또는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소속기술인력에 대한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 5. 장비명세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수탁범위·운영방법 그 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4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자격의 완화) 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이 곤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 2.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3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나.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

다.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댐높이 10미터 이하의 소수력 발전소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설비

제45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73조제1항·제6항 및 이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경력증명서(경력 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한다) 및 재직증명서와 그 증명서류

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라.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

2.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나. 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필증 사본
 다. 대리자 지정서(후임자의 선임없이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
 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 및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별 가중치 변동현황을 기재한 서류(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에 한한다)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6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 등) ① 법 제73조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법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말한다)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에 소속된 기술인력은 법 제7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5에 정하는 교육방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관련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별표 15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기관련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① 안전공사는 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 소요비용을 별지 제42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지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사업수행 소요비용과 산출근거에 관한 설명서
 ② 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난예방 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신청)

①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도)
2. 주요설비의 배치도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4. 준공후 운영계획서
5. 공사의 착공·준공예정일 및 공사공정표
6. 소요자금내역 및 그 조달방법을 기재한 서류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이유서
2. 변경공사개요설명서
3. 제1항 각호의 서류 중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서류

제49조(경미한 변경사항의 신고) ① 법 제85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주소 및 상호
2.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필요한 총 공사기간 내의 공사공정표
3.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총 소요자금 내역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준공 후 운영계획서의 조직, 인력 등 경미한 사항

②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행계획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서

2. 제48조제1항 각호의 서류 중 기재내용이 변경된 서류

제50조(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 영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6에 의한다.

제51조(수수료 등)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17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제5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등)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②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을 “전기사업법제73조제2항”으로 한다.

③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